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4
------	-----

제출년월일 : 2002. 2.1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제안이유

- 평창군도시계획조례가 2001. 5.12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

주요골자

- 전용주거지역(제1종·제2종)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1·2)
- 일반주거지역(제1·2·3종 및 준주거)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3·4·5·6)
- 상업지역(일반·중심·유통·근린)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7·8·9·10)
- 공업지역(일반·전용·준공업)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11·12·13)
-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별표14·15·16)
- 행정규제 관련 점검시 지적된 내용 삭제 및 반영
-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완화 및 오·탈자 수정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1. 7.19(의견 제출사항 없음)
- 기타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필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1 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하며,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별표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별표3 제2호에 마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것에 한한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별표4 제2호아목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로 개정하고 동호에 자목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중사업장 내지 4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중사업장 내지 4중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군사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

별표5 제2호자목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로 하고 동호에 차목 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 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강화원을 제외한다)

별표6 제2호바목중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를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로 하고 동호에 아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

별표7 제2호에 라목 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별표8 제2호에 바목 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별표9 제2호에 사옥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별표7 제2호사목의 공장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별표10 제2호에 사옥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별표11 제2호에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별표12 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별표13 제2호에 바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별표14 제2호에 다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제2호에 다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
-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축·임·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축·임·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16 제2호아목중 "위험물제조소를 말한다"를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 보안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2.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 3. 공사가 부실한 경우 4.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가 부득이한 경우 5.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 6. 3차에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할 때 7.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 8. 허가후 1개월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9.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 한때 10.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별표 1】</p> <p>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략) 라. ~ 마. (신설) 	<p>제26조(행위허가의 취소 등) (삭제)</p> <p>【별표 1】</p> <p>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1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만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하며, 너비12미터이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라. (신설)</p>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3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생략) 마. ~ 타. (신설)</p>	<p>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p> <p>【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2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너비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p>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3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너비15미터이상인 도로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에 한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p>

현 행	개 정 (안)
	<p>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종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p> <p>(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p>(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4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 (생략) 아.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자. ~ 파. (신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p> <p>【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4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p>

현행	개정(안)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5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자.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차. ~ 파. (신설)</p>	<p>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p> <p>(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p> <p>(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p> <p>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p> <p>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p> <p>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군사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p> <p>【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4조제5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p>

변 행	개 정 (안)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 34조제6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및사. (생략) 바. ----(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아. ~ 카. (신설)</p>	<p>(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 강화원을 제외한다)</p> <p>【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 34조제6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및 사.(현행과 같음) 바. ----(주유소·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p>

현행	개정(안)
<p>【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7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 (생략) 라. ~ 자. (신설)</p>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8호관련)</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p> <p>【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7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p> <p>【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8호관련)</p>

현 행	개 정 (안)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생략) 바. ~ 자. (신설)</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9호관련)</p>	<p>【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9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사. ~ 차. (신설)</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별표7 제2호사목의 공장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를 제외한다)</p>
<p>【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0호관련)</p>	<p>【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0호관련)</p>

현 행	개 정 (안)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사. ~ 차. (신설)</p>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1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p> <p>【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1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생략) 나. ~ 마. (신설)</p> <p>【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2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 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p> <p>【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2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p>

현행	개정(안)
<p>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생략) 마. ~ 바. (신설)</p> <p>【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3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생략) 바. ~ 차. (신설)</p>	<p>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3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p>
<p>【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4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 아. (신설)</p>	<p>【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4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p>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5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생략) 다. ~ 차. (신설)</p>	<p>린생활시설(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단란주점을 제외한다)</p> <p>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p> <p>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p> <p>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p> <p>【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5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축·임·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중학교</p>

현행	개정(안)
<p>【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6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생략) 마. --- (위험물제조소를 말한다) 바. (생략) 사. (신설)</p>	<p>및 고등학교에 한한다)와 동호나목의 교육원(농·축·임·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에 한한다) 및 동호나목의 직업훈련소</p> <p>사.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p> <p>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무려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p> <p>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p> <p>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p> <p>【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4조제16호관련)</p> <p>2.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p>